

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

I. 제안사유

-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의 설치 운영 근거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이 2000. 1. 28 폐지(법률 제6236호)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II. 주요골자

- 본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III. 검토의견

-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처리를 위해 제정하였으나,
- 본 조례 제정(1994년도)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상위 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.